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82

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양부남·권향엽·김문수

김영환 · 김한규 · 김현정

이해식 • 전진숙 • 조인철

채현일 • 한병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특정 시설 종 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,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"체육시설업"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"청소년활동시설"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·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. 이를 통

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(안 제10조 제2항제2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7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·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	
절차) ① (생 략)	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		
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			
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			
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			
우에는 시・도, 시・군・구 또			
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			
야 한다.			
1. ~ 26. (생 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27. 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		
	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		
	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・		
	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		
	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		
	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		
	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		
	그 종사자		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